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81
----------	-------

발의연월일 : 2026. 5. 4.

발 의 자 : 이인영 · 이훈기 · 민병덕
강준현 · 이강일 · 이기현
소병훈 · 이정문 · 복기왕
김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 신용공여한도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적극적 기업자금공급 역할을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제3항제1호 중 “기업”을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4. 기업의 인수·합병,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매출채권의 유동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계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을 공여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

7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신용공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③ ----- ----- ----- -----.
1. <u>기업</u> 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1. <u>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u>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 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 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 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 <u>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 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에 대한 <u>신용공여</u>

<u><신 설></u>	<u>4. 기업의 인수·합병, 기업재 무구조의 개선 또는 매출채권 의 유동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 여</u>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